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7호로 2013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  
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간소화 함.(안 제2조 및 제12조)

나. 심의위원회 정비

○ 심의위원중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삭제하고 개최 횟수를 명시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에 관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제7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민간 위원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유지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시기를 ‘정기예산 편성시’에서 ‘연 1회’로 변경하고, 의결시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12.27]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